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인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237 발의연월일: 2024. 12. 5.

발 의 자:이인영·박상혁·김용만

한정애 • 이정문 • 전진숙

김영진 • 백승아 • 이연희

장철민 · 김성회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정치운동의 금지만을 규정하고 겸직 금지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위원의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기업체의 임원 등에 대한 겸직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(안제63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3조의2(겸직 등의 금지)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(職)을 겸 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.

- 1.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
- 2.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
- 3.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의 임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겸직 등의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위원에 대하여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63조의2(겸직 등의 금지) 위원
	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
	(職)을 겸하거나 직무와 관련하
	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
	<u>을 할 수 없다.</u>
	1.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
	2.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
	3.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
	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
	준에 해당하는 회사의 임원